

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-3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2. 5. .

발 의 자 : 이필례의원 외 6인

## 1. 제안이유

최근 지방의회에서 위원회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이라고 하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으며, 간사직을 수행하는 의원에 대한 예우 및 직책 명의 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위원회에 두는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명칭을 변경함(안 제11조).

## 3. 관련법규

지방자치법 제62조

## 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## 5. 예산조치 : 별도 추가되는 예산 없음

## 6. 기타사항 :

가. 입법예고 : 필요

나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다. 관계법령 : 따로불임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      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 제목“(간사)”를“(부위원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간사는”을 “부위원장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간사가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11조(간사) ① 위원회에는 <u>간사</u> 1인을 둔다.</p> <p>② <u>간사</u>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<u>간사</u>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</p>	<p>제11조(부위원장) ① ----- -- <u>부위원장</u> -----.</p> <p>② <u>부위원장은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<u>부위원장이</u> ----- -----.</p>

수 신 :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운영위원장      2012. 5. 18.

제 목 :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위의 안을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.

첨 부 :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. 끝.

발 의 자 : 서종수 위원(인)

외 1 인

( 발의자 서명 별첨 )

